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 흠 제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께 지난 3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‘제안설명’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,

현재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, 본 조례를 통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,

시장으로 하여금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